

행정기관명 고시 제〇〇〇〇 - 호

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·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·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수계(水系)명	소하천명	소하천구역		
		지번 및 지목	면적(㎡)	결정(변경·폐지) 사유

첨부서류: 1.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
2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